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

용을 부담하게 한 때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일)

월평균 부담금액		부당비율			
		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의료기관·약국·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원	15만원 이상	-	-	10	20
	~25만원 미만	-	-	-	-
한국의약품·소·보건의료소·센터·보건의료원	8만원 이상	-	10	20	30
	~25만원 미만	-	-	-	-

~40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14만원 이상	10	20	30	40
50					
~8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20	30	40	50
60					
~3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32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30	40	50	60
70					
1,40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40	50	60	70
80					
~	~				
5,0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

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요양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
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
다.

3.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요양급
여비용
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
액으로 본다.

4.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
씩 가
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나. 요양기관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 등 전
산기록

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
만,

관계서류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수납대장
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처분 모두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가. 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을 자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전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징금은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 다 .

나. 가목의 5년 이내의 기간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

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
용

하여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